



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위·수탁 협약서

2014년 12월

서울특별시강동구

서울특별시강남구

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위·수탁 협약서

강동구청장(이하 “강동구” 이라 한다)과 강남구청장(이하 “강남구” 이라 한다)은 “강동구” 가 소유하고 “(주)나엔” 이 관리·운영 중인 강동구 음식물류폐기물사료화시설(이하 “사료화시설” 이라 한다)을 사용함에 있어 “강남구”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위·수탁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서는 “강동구”에서 위탁하여 관리·운영 중인 사료화 시설의 여유용량을 “강남구”의 관내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화 시설에 반입하여 적정하게 처리함에 있어 상호 역할분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정의) 이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음식물류폐기물”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, 유통, 가공,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·수·축산물류 쓰레기와 다듬고 버리는 조리 전 식품쓰레기, 먹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.
2. “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”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 처리하여 사료나 사료원료 등으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위·수탁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상) 이 협약의 적용대상은 “강남구”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중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음식물류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음식물류폐기물 처리) ① 음식물류폐기물은 “강남구”에서 수집하여 사업장까지 운반하고 사료화시설(나엔 관리·운영)에서는 재활용 처리한다.

② 사료화시설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부득이 처리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강동구와 협의 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5조(이물질처리)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에 사료나 사료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어려운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활용 처리 중에 발생한 이물질은 사료화시설에서 처리한다.

제6조(계약기간) ① 협약서의 계약기간은 2015년1월1일부터 2015년12월31일까지로 한다.

② “강남구”는 계속하여 위탁 처리할 의사가 있을 경우 계약만료 60일전까지 “강동구”에게 계약 연장 신청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③ “강동구”는 전항의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.

제7조(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) 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는 다음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거 사료화시설을 운영·관리하는 (주)나엔의 청구서에 의하여 “강남구”에서 직접 지급한다.

1.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: 음식물류폐기물은 당월 월력일수 기준으로 “강남구”를 포함하여 사료화시설에 반입되는 모든 음식물류폐기물의 1일 평균반입량을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반입량별 연동제로 한다.

- 1일 평균 270톤 미만 반입 : 톤당 95,840원/톤
- 1일 평균 270톤 이상 280톤 미만 반입 : 톤당 95,450원/톤
- 1일 평균 280톤 이상 290톤 미만 반입 : 톤당 95,090원/톤
- 1일 평균 290톤 이상 300톤 미만 반입 : 톤당 94,750원/톤
- 1일 평균 300톤 이상 310톤 미만 반입 : 톤당 94,440원/톤
- 1일 평균 310톤 이상 320톤 미만 반입 : 톤당 94,140원/톤
- 1일 평균 320톤 이상 330톤 미만 반입 : 톤당 93,860원/톤
- 1일 평균 330톤 이상 340톤 미만 반입 : 톤당 93,610원/톤
- 1일 평균 340톤 이상 350톤 미만 반입 : 톤당 93,360원/톤
- 1일 평균 350톤 이상 360톤 미만 반입 : 톤당 93,130원/톤
- 1일 평균 360톤 이상 반입 : 톤당 92,910원/톤

2. 지급방법 및 처리비 산출 : 제7조 1항에 의거 매월 (주)나엔이 청구하고,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온라인 입금한다.

제8조(음식물류폐기물 반입) ① 음식물류폐기물 반입량은 “강남구”내 감량화 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폐기물을 말하며 월력 일수 기준 1일 평균 40톤 ±10%로 한다.

② 특별한 사유 발생시 “강남구”와 (주)나엔은 상호간 반입량 및 반입시간을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.

제9조(반입가산금) “강남구”는 「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 및 「서울특별시강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설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2규정에 의하여 “강동구”의 청구에 의거 기한내 납부하여야 한다.

- 반입가산금 산정기준 : 반입량 × 6,500원/톤

제10조(지도·감독) “강남구”가 “나엔”에게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 경우 “강동구”를 통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1조(협약의 변경 및 해지) ① “강남구”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“나엔”이 “강남구”에게서 처리 위탁받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가 어렵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을 때.

2. “나엔”이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지급 받았을 때.

② “나엔”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“강남구”가 제8조제1항에서 “나엔”과 협의한 월 반입량의 30%미만을 3회 이상 반입한 경우.

2. “강남구”가 반입한 음식물류폐기물에 이물질이 과다하여 3회 이상 경고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.

③ “강남구”와 “나엔” 이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30일전에 “강동구” 및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2조(반입중지) “강남구”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화시설내로 반입하는 차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민원 예방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반입을 일시중지 할 수 있다.

항 목	반 입 중 지 규 정(해당차량)				
	1차	2차	3차	4차	5차
음·폐수 흘림	주의 2회	경고	1일	3일	5일
차량 청결 상태(도색, 세차 등)	주의 2회	경고	1일	2일	3일
기타(반입시간, 금연 등)	주의 2회	경고	1일	2일	3일

제13조(책임한계) “나엔”은 음식물류폐기물 수탁 처리 시 발생하는 각종 불법, 부당행위 및 사고 등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“강동구”나 “강남구”에게 전가할 수 없다.

제14조(보칙)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폐기물관리법」 및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등과 “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관련 조례” 를 준용한다.

제15조(관할법원) 본 협약에 대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는 “강동구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
제16조(협약서의 작성)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 “강동구”와 “강남구”가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4. 12. .

협약자 : 서울특별시강동구청장 이 해 식 (인)

협약자 :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 신 연 희 (인)